



최신 판례 예규

마케팅 Tax Consulting

주가차액보상금액의 손금인정 판단시 퇴직 등으로 소멸되고 부여 취소된 선택권은 제외하고 계산함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

기준법령법인-306, 2019.06.05

◆ 질 의

- 갑법인은 '99.8.26. 설립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01.8.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제25호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00.7.20.~'02.7.19.)받은 후 갱신을 거쳐 '19.9.20.까지 유효한 상태임
- 갑법인은 '05.3.29.부터 임직원 등에게 벤처기업육성법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 '15~'17사업연도에는 '08~'13사업연도에 부여한 429,600개의 주식매수선택권 중 125,473개('14년 3배의 무상증자 및 '17.8.23. 합병 1:8718 반영 시877,315개)의 행사가 이루어졌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함에 따른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 3,289백만원에 대해 손금산입의 경정청구를 '18.11.26. 제기하였음

질의

- (질의1)'09.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를 해석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09.1.1. 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 누계하여 판단하는지

- (질의2)'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의 '발행주식총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직 등으로 그 부여가 취소된 선택권을 차감하여 판단하는지

◆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는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9.1.1.)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하여 누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누계에는 「상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취소된 것등은 제외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1281, 2019.06.11

◆ 질 의

사실관계

- 질의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질의인의 보장성보험을 압류하고 압류금지재산 150만원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전액 추심하였음

질의

- 과세관청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질의인(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추심할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한 경우 질의인(체납자)이 초과추심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정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보장정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상속증여-1789, 2019.06.12

◆ 질 의

사실관계

- 질의인의 형 가족은 미국에 이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형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고, 형의 아들(조카)의 학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의인인 학비를 지원하고자 송금함

질의

- 질의인이 조카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68(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68, 2008.12.10.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지방세운영과-1475, 2019.05.23

◆ 질 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전연도 12.31.을 폐업일로 하여 과세기준일(1.1.) 이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비과세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 받은 해당 업종의 면허가 폐업 중이어야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월 2일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전년도 12월 31일을 폐업일로 하여 사실상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